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세부지침

제정 2025. 03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우송대학교 「학칙」 제36조제7항 및 「성적평가 및 처리규정」 제17조의2에 따른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은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, 어학 성적 향상, 전공능력 배양 등 학업 성취도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특별히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제3조(특별시험 실시) ①특별시험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문제를 제출하여 학과(전공)교수회의의 검토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특별시험의 시행 시기는 학과(전공)교수회의에서 정하여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특별시험의 합격은 95점(100점 만점) 이상으로 하며, 그 성적은 A+로 인정한다.

④공인된 어학시험성적 또는 자격증 또는 대회 수상 등의 실적이 있을 경우 본 조의 특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으며, 세부적인 대체인정 자격의 범위 및 최대 인정학점은 [별첨 1]로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학점인정) ①특별시험에 합격한 경우 학생은 [별표 1]에 의한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(전공) 사무실로 제출하고 학과(전공)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승인된 내용은 대학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학점인정 승인을 얻은 학생은 대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교과목을 신청하며, 학과(전공)장은 해당 교과목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에 따라 학점인정이 승인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「성적평가 및 처리규정」 제8조에 따른 출석을 인정하며, 평가(수시 및 정기평가)는 특별시험의 결과를 준용하여 성적을 인정한다.

④학점인정으로 성적이 평가되는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상대평가 모수에서 제외하고, 별도의 절대평가로 진행한다.

⑤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도 본 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5조(인정범위) ①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재학기간 중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어학시험성적 또는 자격증 또는 대회 수상은 본 대학 입학 이후(휴학기간도 포함)에 취득한 것만을 인정한다. 다만, 어학시험성적의 경우 그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③학생의 모국어에 해당되는 어학시험성적으로는 제4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.

④보건·복지계열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는 교과목은 제4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.

⑤학점인정은 해당 자격요건에 따라 승인된 학점의 범위 이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며, 2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합산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.

제6조(기타) ①제3조제4항에 의한 동일한 실적(자격 증빙)으로는 교양 또는 전공(다전공, 특별교육과정)에서 학생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1회에 한하여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하다.

②제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학점인정의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를 할 수 없으며, 교과목 수강변경 또는 수강철회 등 학생 자신의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학생의 책임으로 한

다.

③기타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.

부 칙(2025. 03.)

제1조(시행일) 이 세부지침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신청서

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신청서

<table>
<tr><td>소속학과(전공)</td><td colspan="2">학부</td><td colspan="2">전공</td></tr>
<tr><td>학 번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/tr>
<tr><td>연락처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이메일</td><td>@</td></tr>
<tr><td>신청 영역
(해당 항목에 ✔표시)</td><td colspan="2">[ ] 교양
[ ] 전공(다전공/특별교육과정)</td><td>취득일자</td><td>20 . . .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해당 자격
(해당 항목에 ✔하고 작성)</td><td>[ ] 특별시험</td><td colspan="3">시험점수 : 점(100점 만점)
구 분 : □ 상 □ 중 □ 하</td></tr>
<tr><td>[ ] 자격증</td><td colspan="3">자격증명 :
구 분 : □ 상 □ 중 □ 하</td></tr>
<tr><td>[ ] 대외수상</td><td colspan="3">대회명 및 수상내역 :
구 분 : □ 상 □ 중 □ 하</td></tr>
<tr><td>[ ] 어학성적</td><td colspan="3">시험명 및 점수/급수 :
구 분 : □ 상 □ 중 □ 하</td></tr>
</table>

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주관학과(전공)장

붙임 : 1.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(사본)

※ 교양 교과목의 경우에는 ‘주관학과(전공)장’ 란에 ‘교양대학장’이 승인함